옥 천 군

선람	기관의 장

군 보

http://www.oc.go.kr

제1119호 2019. 7. 10.(수)

【공 고】

○ 옥천군 공고 제2019-605호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 옥천군 공고 제2019-608호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

○ 옥천군 공고 제2019-609호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5

○ 옥천군 공고 제2019-637호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4

○ 옥천군 공고 제2019-638호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1

회람									

발행: 옥천군 편집: 기획감사실(☎730-3063)

옥천군 공고 제2019 - 605호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우리 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자를지원하고, 보훈단체의 국내외 전적지 순례사업 등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보훈시책을 추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보훈단체 정의 및 공훈선양시설 명시 등 문구 조정 (안 제2조, 제7조)

○ 독립운동사적지 및 국내외 전적지 대상 순례 사업지원 확대 (안 제8조)

○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명예수당 신설 (안 제8조의2)

가. 순직공무원 유족 → 월 5만원

나. 만 65세 이상 공상공무원 → 월 5만원

4.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30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un12345@korea.kr

2)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3) 팩스 : 043-731-198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주민복지과(전화 043-730-3311, 33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조례 제 호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옥천군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7조제1호 중 “보훈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를 “지방자치단체, 보훈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로, “에 필요한”을 “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를 “공훈선양시설”로, “홍보 등 활성화”를 “홍보”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을 “예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사업
2.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국내외 독립운동사적지 답사 사업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희생과 공적이 뚜렷한 참전자에 대한 국내외 전적지 순례사업

같은 조 종전 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국가유공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1명) : 월 10만원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4조제1항제14호의 국가유공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1명) : 월 5만원

6. 법 제4조제1항제15호의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 월 5만원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 3. (현행과 같음) 4. ---------- 옥천군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
제7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보훈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관리와 홍보 등 활성화	제7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 ---------- ---------- ----------. 1. -------- 지방자치단체, 보훈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 ----------을 위한---------- 2. 공훈선양시설 ---------- 홍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8조(보훈단체 지원) 군수는 보훈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훈단체 지원) ---------- ---------- -------- 예산 ---------- ----------.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사업 등	2.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국내외 독립운동사적지 답사 사업
<신 설>	3. 희생과 공적이 뚜렷한 참전자에 대한 국내외 전적지 순례사업
3. “호국·보훈의 달” 호국·보훈의식 고취행사에 필요한 예산 등	4. “호국·보훈의 달” 호국·보훈의식 고취행사에 필요한 예산 등
4. 자원봉사사업과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5. 자원봉사사업과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제8조의2(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군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	제8조의2(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 ---------- ---------- ---------- ---------- ---------- ---------- ---------- ---------- ----------

당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국가유공자의 유족 1명(배우자, 자녀, 부모만 해당) : 월 10만원	2. ---------- 국가유공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1명)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 제4조제1항제14호의 국가유공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1명) : 월 5만원
<신 설>	6. 법 제4조제1항제15호의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 월 5만원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

옥천군 공고 제2019 - 608호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학과성적 우선주의로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이 제한되고 자유학년제 도입 등 성적 외 활동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 등을 정비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의 성취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급대상을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안 제2조)

○ 군내 거주하는 주민을 군내 주소를 둔 자로 정비 (안 제7조)

○ 장학금 지급기준을 각 분야에서 인정할 만한 기량 및 성취도를 나타내는 자로 변경 (안 제8조)

4.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30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un12345@korea.kr

2)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3) 팩스 : 043-731-198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주민복지과(전화 043-730-3311, 33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조례 제 호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급자”를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6항 중 “수급자”를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하는 주민”을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를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각 분야에서 인정할 만한 기량 및 성취도를 나타내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장학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군수가 정하고, 장학생 선발기준, 지급정지 사유 등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장학금”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7. “수급자”란 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5. (현행과 같음) 6. ----------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삭 제>
제6조(대상사업) 제4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 5. (생 략) 6. 수급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사업 7. (생 략)	제6조(대상사업) ----------. 1. ~ 5. (현행과 같음) 6.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7.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군내 거주하는 주민 또는 군내 소재를 둔 시설 및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지원대상) ----------주소를 둔 사람 ----------.
제8조(장학금 지급) ① 제6조제6호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은 법	제8조(장학금 지급) ① --------

에 따른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각 분야에서 인정할 만한 기량 및 성취도를 나타내고 ----------.
②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정하고, 장학생 선발기준, 지급정지 사유 등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장학생의 선발 등)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시기 및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삭 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

옥천군 공고 제2019 - 609호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학과성적 우선주의로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이 제한되고 자유학년제 도입 등 성적 외 활동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 등을 정비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의 성취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학금 지급대상을 학업성적 향상자, 예체능 부분 발전가능성 보유자, 우수한 자원봉사활동자로 정비 (안 제2조)

○ 장학금 신청기한을 매년 하반기로 정함 (안 제3조)

○ 장학금 지급기한을 장학생 선발 후 10일 이내로 정함 (안 제4조)

○ 장학금 지급 중단 사유에 차상위계층의 자격상실 포함 (안 제5조)

4. 의견 제출

○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30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un12345@korea.kr

2)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3) 팩스 : 043-731-198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주민복지과(전화 043-730-3311, 33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조례 제 호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라 함은 최근학년의 이수한 학업성적이 학년석차 100분의 50이내인””을 ““각 분야에서 인정할 만한 기량 및 성취도를 나타내고”라 함은 평소 바른 학업태도로 전 학기 대비 상당한 성적 향상을 이룬 경우, 예·체능 부문에서 발전 가능성을 보유한 경우, 우수한 자원봉사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 밖에도 기타 분야에서 자질이 뛰어난 중·고등학생을 해당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추천하도록 한다.

제3조 중 “학년도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를 “매년 하반기 군수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매학기 개시 후 60일”을 “장학생 선발 후 10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급자”를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학생 신청서

1. 신 청 인
 ○ 소 속 : 학교(과 학년 반)
 ○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
2. 보 호 자
 ○ 주 소 :
 ○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
 ○ 신청인과의 관계 :
3. 적격자 여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4. 보호자 재산 소득 상황

부 동 산	동 산	연간 소득액	기 타	비 고

20 년도 옥천군(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붙임: 학교장의 추천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1. 소　　속 :　　학교(　　과　　학년　　반)
2. 성　　명 :　　(한자)
3. 주　　소 :
4.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교 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가. 추천분야

▢ 학업태도 - 상당한 성적 향상 등
▢ 예체능 특기자
▢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 기타 분야 (　　)

나. 추천이유 : *추천분야에 따른 해당사항 기술 및 관련자료 첨부*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　　(직인)

옥 천 군 수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라 함은 최근학년의 이수한 학업성적이 학년석차 100분의 50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 “각 분야에서 인정할 만한 기량 및 성취도를 나타내고”라 함은 평소 바른 학업태도로 전 학기 대비 상당한 성적 향상을 이룬 경우, 예・체능 부문에서 발전 가능성을 보유한 경우, 우수한 자원봉사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
② 제1항에 의한 학업성적에 있어서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의 성적으로 하며,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전교육과정의 성적이 우수하며 행실이 바른 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② 이 밖에도 기타 분야에서 자질이 뛰어난 중・고등학생을 해당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추천하도록 한다.
제3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학년도 학기 개시후 20일 이내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해당 학교장의 추천(별지 제2호	제3조(장학금의 신청) ----------매년 하반기 군수가 정하는 기간----------

서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장학금의 지급) ② 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학기 개시 후 60일 이내에 선발된 장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장학금의 지급) ② ----------장학생 선발 후 10일 ----------.
제5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정지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① 조례 제8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원대상자가 수급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 칙 안	의　　견

옥천군 공고 제2019 - 637호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19.7.1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장애등급 관련조항과, 일부 조항을 변경된 상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교통약자 실태조사 실시문구 변경 개정(안 제3조의2)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위탁기간 변경 개정
(안 제10조제3항)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개정
(안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제1호)

4. 의견제출

○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 730-3533, FAX : 043) 731-324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조례 제　　호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회 간사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1급 또는 2급 장애인들”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1급 또는 2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였던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장애인은 제12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실태조사)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실태조사) ---------- ---------- ---------- ---------- ---------- ----------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간사는 교통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한 차례만 ---------- ---------- ---------- ---------- ---------- ----------

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생 략)	---------- ----------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 ③ (생 략) 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시 휠체어를 탄 1급 또는 2급 장애인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약제 등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과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 4. (생 략) ② (생 략)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

옥천군 공고 제2019-638호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19.7.1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장애등급 관련조항과, 일부 조항을 변경된 상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정도”로 변경 개정(안 제5조제2항)

○ 이용자 우선순위 별표1 변경 개정(안 제5조제2항별표1)

○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안 별지2호, 별지3호)

4. 의견제출

○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 730-3533, FAX : 043) 731-324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였던 1급 또는 2급 장애인은 제6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본다.

［별표］

우선순위 표

항목	세부내용	배점(점)	비고
①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4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② 이용목적	병원(재활)치료	30	
	직업훈련	25	
	직장·업무	20	
	초중고, 대학교 교육	30	
	복지관	10	
	종교 활동	10	
	취미·오락, 쇼핑, 기타	10	
③ 이용횟수 (전 1주)	미 이용	30	
	1회 이용 당 5점 감점	25~0	

※ 우선순위는 고 득점자 순으로 하며, 동점일 경우 ①, ②, ③의 고득점 순으로 함.

〔별지 제2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즉시 □예약)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용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애등급	
신청내용	이용목적	□ 병원(재활)치료 □ 직업훈련 □ 직장・업무 □ 초중고・교육 □ 대학교 □ 복지관 □ 종교활동 □ 취미・오락 □ 쇼 핑 □ 기 타			
	이용시간	년 월 일(요일) : ~ 년 월 일(요일) :			
	출 발 지 (승차위치)				
	목 적 지				
	요청사항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

210㎜×297㎜

〔별지 제3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

일련번호	접수일자	접수상담원	신청인		이용자				이용신청현황			처리결과					비고
			성명	관계	성명	생년월일	장애등급	연락처	이용일시	출발지	목적지	운전원	차량번호	배차일시	운행일시	이용요금	

257㎜×36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용신청자의 처리) ① (생략) ②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등급,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차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이용신청자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애정도----------. ---------- 별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 칙 안	의　　견